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09. 11. 19. 규정 제 32호

개정 2010. 2. 26. 규정 제 48호

개정 2010. 4. 26. 규정 제 53호

개정 2011. 2. 23. 규정 제 84호

[시행 2012.8.31.] [세칙 제44호, 2012.8.31., 타내규개정]

[시행 2013.4.22.] [규정 제155호, 2013.4.22., 일부개정]

[시행 2015.6.25.] [규정 제221호, 2015.6.25., 일부개정]

[시행 2015.9.30.] [규정 제229호, 2015.9.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이사회는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을 새로 선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만료가 예정된 임원의 후임자 선임을 위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전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 추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원 직위 결원이 여러 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단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위원 정수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3.4.22., 2015.6.25>

④ 제3항에 따른 재단의 비상임이사인 위원에는 재단 정관에 따른 당연직 이사 1명이 당연히 포함된다. <신설 2013.4.22>

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재단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22>

제3조(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선정) ①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은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학계 및 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재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 산업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

2. 학자금지원 업무에 대한 전문성

3. 재단의 경영상황 및 발전에 대한 관심

4.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윤리관과 합리적 성품

② 제1항 단서의 “재단 구성원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1인”은 재단 직급별 대표자 회의(이하 “대표자회의”라 한다)에서 복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3.4.22>

③ 제2항의 대표자회의는 재단 종합직원 각 직급별 대표자 1명씩으로 구성하되,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표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4.22>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추천절차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가 전체 직원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다.

⑤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인원수는 1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3.4.22>

제4조(존속기간 등) 위원회는 임명권자에 의한 임원의 임명이 있을 때까지 존속하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같다.

제5조(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재단의 비상임이사 중에서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3.4.22>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4.22>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3.4.22>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22>

1. 임원 후보자 모집방법 결정

2. 임원 후보자 심사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임원 후보자의 추천

가. 이사장 후보 추천

나. 감사 후보 추천

다. 비상임이사 후보 추천

4. 이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 내용 협의 및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

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등

제7조(임원 후보자 모집방법) ① 위원회는 결원 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과 재단의 성격,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3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하되, 이사장직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또는 공개모집·추

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 후보자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범위는 인재채용, 인재추천, 인사컨설팅 등 인사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정한다.

제8조(공개모집에 의한 임원 후보자 모집) ① 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1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채용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후보자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인사혁신처 및 기획재정부에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③ 공개모집방식으로 임원 후보자를 모집하였으나, 응모자가 결원 예정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모자가 결원예정직위 수의 2배수 이상이 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을 의무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제9조(추천방식에 의한 임원 후보자 모집) ① 추천방식으로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관련학계·단체, 인사혁신처(국가인재 DB), 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후보자로 추천된 경우에도 공개 모집 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에 의한 임원 후보자 모집) 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방법으로 후보자를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 방법은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4.22>

② 공개모집·추천방식 병행의 경우에도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4.22>

③ 삭제 <2013.4.22>

제11조(제출서류) 임원 후보에 응모하거나 추천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경우 직무수행 계획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1. 별지서식 1의 지원서
2. 별지서식 2의 자기소개서
3. 별지서식 3의 직무수행계획서
4. 별지서식 4의 추천서(추천방식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한정한다)
5. 최종학력증명서·경력증명서·관련 자격증·박사 학위 논문 요약서 등 학력·경력·

자격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심사를 위해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제12조(임원 후보자 자격요건 등) ① 공운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후보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3.4.2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상임이사 후보자가 될 수 없다.

1. 재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2. 재단에 대한 회계감사 또는 세무대리를 하는 사람
3. 재단과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그 밖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③ 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해당시기 임원 후보자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는 기관 경영과 재단의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⑤ 위원회는 재단의 이어나 감사로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이어나 감사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사원칙 등) ① 위원은 별표 1의 직위별 직무수행요건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임원 후보 응모자 및 추천된 자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② 위원은 응모자 및 추천된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및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3.4.22>

1. 위원이 응모자 및 추천된 자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직접 추천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응모자 및 추천된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 응모자 및 추천된 자는 위원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4.22>

④ 위원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응모자 및 추천된 자에 대한 회의 및 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제14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응모자 및 추천된 자에 대해서 1차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결원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발한 후, 서류심사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2차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직위의 경우에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② 최종 임원 후보로 추천될 자는 면접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투표로 순위를 결정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후보자 추천과정으로써 면접심사를 생략하였을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따른다.

③ 응모자 및 추천된 자에 대한 심사평가는 별지서식 5의 임원 후보자 심사평가표에 따른다. <개정 2013.4.22>

제15조(최종 임원 후보자 추천) ① 위원회는 3배수부터 5배수까지 최종 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우선순위 없이 추천한다. 다만, 직위 특성, 대상 직위 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3배수 미만으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이사장 후보자는 교육부장관, 감사 후보자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비상임이사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3.4.22>

③ 위원회가 응모자 및 추천된 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라 후보자 모집절차를 다시 실시하였음에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직접 발굴하여 추천할 수 있다. 이때 후보자 발굴방법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공운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원이 연임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 한다. <신설 2013.4.22>

제15조의2(이사장 후보자와의 계약안 협의 등) ① 이사회는 이사장의 임명과 관련하여 임명될 이사장이 임기 중 달성하여야 할 구체적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계약안을 정하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안에 대하여 이사장 후보자로 추천하고자 하는 자와 계약내용과 조건 등을 협의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자와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계약안의 내용이나 조건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4.22]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직제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장이 된다. <개정 2012.8.31>

③ 간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소집 통지 및 심사결과의 처리
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존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④ 간사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임시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관련 사항의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명단, 모집·심사·추천 등 단계별 임원 후보자 명단, 개인별평가표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4.22>

②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의 심의·의결 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4.22>

③ 위원회 위원은 후보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후보자 개인의 인적사항, 사생활 정보, 심사내용 등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재단의 예산범위 안에서 심사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사항)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과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2.26>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0.4.26>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2011.2.23>

부칙 <세칙 제44호, 2012.8.31> (직제규정 시행세칙)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내규의 개정) ①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업무분장규정」”을 “「직제규정 시행세칙」”으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규정 제155호, 2013.4.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21호, 2015.6.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정 제229호, 2015.9.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4.22., 2015.9.30>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1. 이사장

구 분	요구되는 역량 및 선임 기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연구, 경영·경제, 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장학사업 및 학자금대출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 정부정책 및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비전제시 및 전략적 리더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중장기 비전과 미래전략 설정 능력 ▪ 현상의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의 보유와 위기관리 능력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관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 대규모 조직을 성공적으로 경영한 경험 ▪ 다양한 요구, 갈등을 융화하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통솔력
최고경영자로서의 자질과 덕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 등의 윤리의식과 모범적 행동 ▪ 경영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인 의지 ▪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변화와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대외업무 추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독려할 수 있는 협상 능력 ▪ 정부, 국회, 언론 등의 유관기관 및 고객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 관계 능력

2. 감사

구 분	요구되는 역량 및 선임 기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연구, 경영·경제, 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예산, 회계 및 감사업무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 ▪ 장학사업 및 학자금대출 업무 등에 대한 지식 ▪ 정부정책 및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 및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 ▪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 ▪ 사고예방과 조직의 기강을 높일 수 있는 추진력
내부 통제시스템 및 조직관리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 통제시스템의 효율성, 통제 보고의 양과 질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능력 ▪ 감사조직의 독립성 유지 및 전문성 제고 능력 ▪ 독립된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감사로서의 윤리의식과 소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 등의 윤리의식과 모범이 되는 행동 ▪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소양 ▪ 내부감사 기능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혁신 능력
외부감사인 등과의 업무협조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감사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외부 감사인 및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 능력 ▪ 감사정보의 공유 및 감사인력, 감사실시 등에 대한 협력활동 수행 능력

3. 상임이사

구 분	요구되는 역량 및 선임 기준
<p>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연구, 경영·경제, 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장학사업 및 학자금대출 업무 등에 대한 전문지식 ▪ 정부정책 및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p>비전제시 및 전략적 리더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의 중장기 비전과 미래전략 설정 능력 ▪ 현상의 정확한 진단과 정책대안 제시 능력 ▪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의 보유와 위기관리 능력
<p>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조직관리 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능력 ▪ 다양한 요구, 갈등을 융화하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통솔력
<p>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렴성, 준법성, 도덕성 등의 윤리의식과 모범이 되는 행동 ▪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으로 책임경영을 선도할 수 있는 소양
<p>국내외 유관기관과의 대외업무 추진능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고 독려할 수 있는 협상 능력 ▪ 정부, 국회, 언론 등의 유관기관 및 고객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관계 능력

4. 비상임이사

구 분	요구되는 역량 및 선임 기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식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연구, 경영·경제, 금융 전반에 대한 지식 및 경험 ▪ 장학사업 및 학자금대출 등 재단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식견 ▪ 정부정책 및 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이해
직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할 인식 ▪ 이사회의 기능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활성화하려는 의지 ▪ 전문성을 발휘하여 정책제언을 할 수 있는 적극적 의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추진력 ▪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기본윤리 및 책임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의의무와 충실의무 이행 노력 ▪ 재단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강한 책임감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혁지향적 성향
<p><권장요건> 오른쪽 칸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 보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 4)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3)에 열거된 기관의 감사·회계 부문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 5)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자 6)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경력 등이 1)부터 5)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지서식 1]

지 원 서

공모 직위명		접수번호	기재 불요
--------	--	------	-------

사진부착 (3.5cm x 4.5cm) 최근 6개월 이내	인 적 사 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민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주택]() -		휴대폰	E-mail
		[직장]() -				

	기 간	학 교 명	전 공	학 위
학 력 사 항				

병역 사항	병역	필, 병역특례, 면제 (면제시 사유 :)			
	군 별	계 급	복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개월)	

자 격 및 면 허	종 류	취득년월일	어 학	외국어명	능력 (상·중·하)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 무 처	근무 부서	직 위	담당업무

※ 주요사항을 기술하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양식을 확장하여 기술(이하 동일)

훈·포상실적

번호	연도	수상명	수여기관

위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하오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원 자 :

(서명)

[별지서식 2]

자 기 소 개 서

※ 주요업적 및 경력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별지서식 3]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지원·관리 및 재단 선진화 계획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여 주십시오. (분량: A4용지 2매 이내)

[별지서식 4]

임원 후보자 추천서

추천직위	
후보자 한글성명(한자)	
후보 주요 경력	○ ○ ○ ○
추천 사유	
덧붙일 내용	

위 사람을 한국장학재단 000 후보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서명)

※ 추천인 주소 :

※ 추천인 연락처 :

[별지서식 5]

임원 후보자 심사평가표

□ 후보자 성명 :

능력요건	심사항목	배점	평가점수				
			A (1.0)	B (0.9)	C (0.8)	D (0.7)	E (0.6)
① 전문가적 능력	·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10					
	· 행정 및 경영 경험	10					
	· 관련분야 국내외 저명도	10					
② 전략적 리더쉽	· 비전제시 및 혁신지향 능력 · 전략적 사고 및 전략수립 능력 · 유연하고 전향적 자세를 견지하는 능력	20					
③ 문제해결 및 조직관리 능력	· 문제 해결 능력 · 고객지향성 및 새로운 사고방식의 전파능력 · 팀워크형성 및 목표공유능력 · 업무개선·활용 능력	15					
④ 의사소통 및 협상능력	· 대고객 공감대 형성 능력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능력	15					
⑤ 책임감과 윤리의식	· 사회적 책임감 · 윤리의식	20					
합 계		100	점				
총 평							

년 월 일

한국장학재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